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189호 2009. 3. 4 (수)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44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1
○ 정선군규칙 제1145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8
○ 정선군규칙 제1146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10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6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14
○ 정선군고시 제2009-18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15
○ 정선군고시 제2009-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16
○ 정선군고시 제2009-20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17
○ 정선군고시 제2009-21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18
○ 정선군고시 제2009-2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19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107호 2009년도 정선군민 제안모집 공고……20
○ 정선군공고 제2009-108호 2009년 정선군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22
○ 정선군공고 제2009-131호 정선군종합체육시설 부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24
○ 정선군공고 제2009-132호 소하천 점·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27
○ 정선군공고 제2009-133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공고……28
○ 정선군공고 제2009-13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9
○ 정선군공고 제2009-135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 · 사용)허가 공고…… 31
○ 정선군공고 제2009-136호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 제거대상내역……32
○ 정선군공고 제2009-137호 소나무류가지마름병 피해목 제거대상내역……3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제 189 호 정 선 군 보 2009. 3. 4. (수요일)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02. 24.

정선군규칙 제1144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4. 만 70세 이상의 자
5.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법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경기준)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 징 금 액	감 경 기 준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1/2 감경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일 때 1/2 감경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8세 이상의 자를 호객·접객·윤락행위가 아닌 단순 고용한 행위 1/2 감경 (※ 단순고용이란 업소에서 주방, 청소, 경리, 서빙, 노래방에서의 시간당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업주의 연령확인 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 제시, 허위신분증제시 등 나이를 속여 거짓으로 알려주어 위반한 경우 1/2 감경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약물 또는 기타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1/2 감경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1/2 감경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 감경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유인 인원이 10인 미만일때 1/2 감경
9. 법 제26조의 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1/2 감경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감 경 사 유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위반사유	처리결과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인적사항			위반일자 및 내용	감경사유	감경금액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 경 처 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정 이 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군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우리군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자체 과징금 감경기준(안)을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왔으나, 제도적 근거와 체계적인 부과처분 기준이 필요하여 이에 감경규칙을 제정 시행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따른 감경 및 제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제3조, 제4조)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범위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

○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감경업무에 따른 감경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제6조, 제7조)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02. 24.

정선군규칙 제1145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당직수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 직 수 당

구 분	금 액	비 고
일·숙직 근무의 경우	50,000원	
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30,000원	
상수도 시설지	30,000원	교대근무

개 정 이 유

○ 군 산하 소속 기관별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규정을 재정비하여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원활한 당직근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당직수당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

-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한 일·숙직비를 5만원으로 인상(**제4조의2제1항**)
-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당직근무 강화를 위한 당직근무자 보강 편성을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로 규정하도록 함(**제6조제2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02. 24.

정선군규칙 제1146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군수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가 연출단장 및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급여지급 등)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원에 대한 수당(출연료)은 별표 2 기준에 의한다.

제6조(모집방법 및 채점기준) ①조례 제6조2항에 의한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의한 채점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단원채용의 우선순위) 단원신규 채용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팔도아리랑 경창대회 및 학생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2. 연령이 적은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계	수석단원	단 원	비 고
40	4	36	

【별표 2】

□ 단원의 수당(회당 출연료)

(단위: 천원)

수 석 단 원		단원(명예단원 포함)		비 고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80	150	150	120	

※ 기간구분은 단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소(또는 소속) :
성 명 :

귀하를「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0 . . . ~ 200 . . .(2년간)

200 . . .

정 선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소(또는 소속) :
성 명 :

귀하를「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 ○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0 . . . ~ 200 . . .(2년간)

200 . . .

정 선 군 수

제 정 이 유

○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코자 하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코자 함.

주 요 내 용

○ 단원의 구분 및 정원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2조)
○ 운영위원회 및 단원의 위촉 등에 관한사항 규정(제3조~제4조)
○ 급여지급 및 모집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6조)
○ 단원채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사항 규정(제7조)

정선군고시 제2009-16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17.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황 종 섭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2-1번지
하 천 명		지장천(지방2급하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52-103천(312-1번지선)		
	허가량	A = 48㎡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6년 10월 09일 ~ 2008년 11월 25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관리부지를 위한 점용		

정선군고시 제2009-18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23.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		
	대 표 자	정선군수 (관광문화과장)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하 천 명		한 강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5번지(천) 일원		
	허가량	A = 4,240㎡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2월 19일 ~ 2011년 06월 17일		
	목 적 및 사 유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임시궁도장 조성		

정선군고시 제2009-19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23.

정 선 군 수

<table>
<tr><td rowspan="2">시행(점용·사용)자</td><td>상호 및 명칭</td><td colspan="4">정선군수(환경산림과장)</td></tr>
<tr><td>대 표 자</td><td></td><td>주 소</td><td colspan="2">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td></tr>
<tr><td colspan="2">하 천 명</td><td colspan="4">골지천(지방하천)</td></tr>
<tr><td rowspan="4">공사(점용·사용) 개요</td><td>위 치</td><td colspan="4">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84-2번지 일원</td></tr>
<tr><td>면 적</td><td colspan="2">A=515㎡</td><td>폐천부지 예상면적</td><td>‘없 음’</td></tr>
<tr><td>기 간</td><td colspan="4">2009년 02월 23일 ~ 2009년 09월 30일까지</td></tr>
<tr><td>목 적 및 사 유</td><td colspan="4">임계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td></tr>
<tr><td colspan="6">※ 설계도서 : 별도보관</td></tr>
</table>

정선군고시 제2009-20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25.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정선레미콘		
	대 표 자	엄 주 호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10
하 천 명		한강(지방1급하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허가량	0.007㎥/sec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레미콘가동용수를 위한 점용		

정선군고시 제2009-21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26.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		
	대 표 자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9
하 천 명		오 대 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8번지		
	허가량	A = 621㎡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3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국도59호선 나전지구 도로정비공사로 인한 하천점용		

정선군고시 제2009-2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 · 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3. 02.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대 표 자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번지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99-1번지 일원		
	허가량	A=600㎡ 다기능사방댐 1개소(L=34m, B=16.8m)		
	기 간	2009년 03월 02일 ~ 2009년 06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재해예방 및 하류지역의 가옥,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방댐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 “별첨”				

정선군공고 제2009-107호

2009년도 정선군민 제안모집 공고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제1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우수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 2. 18.
정 선 군 수

1. 관련규정
 가.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동 시행규칙
2. 공모기간 : 2009. 2. 18 ~ 2009.11.30
3.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포함)
4.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6) 연구비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7)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등
5. 응모방법 : 인터넷, E-mail, 우편 등
 가.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제안의 제목, 개요 및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다. 접 수

(1) 인터넷

- 정선군홈페이지(www.jeongseon.go.kr)
  군민참여공간(**상상플러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2) E-mail : sanghoon82@korea.kr

(3) Fax : (033) 560-2592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앞(033-560-2125)

6. 제안심사

가. 심사안건 : 2009.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라. 심사방법

(1) 1차 심의(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실무심의)

(2) 2차 심의(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3) 3차 심의(제안심사위원회 심의) : 창안등급결정

마. 결과통보 : 2009. 12월 중(개별통보)

7.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2009년 연말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1) 금 상 :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 은 상 :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 동 상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 장려상 :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노력상 : 50만원 이하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다. 제안공모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108호

2009년 정선군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안모집을 공고합니다.

2009. 02. 18.
정 선 군 수

1. 제안관장기관 : 정 선 군

2. 제안의 종류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

나. 지정제안 : 군수가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 ○ 지방행정제도 개선방안
- ○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방안
- ○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 조성 마련 방안
-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 ○ 관광지 개발과 연계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 ○ 주민편익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방안
- ○ 인센티브제를 통한 행정의 선의경쟁 유도 방안

다. 직무제안

- ○ 직무수행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공로를 인정 읍면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

3. 제안의 자격과 방법

가. 제안의 자격 : 정선군 산하 전 공무원

나. 제안의 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 – 반드시 국민신문고내 공무원제안관리시스템 접속(https://gov.epeople.go.kr:8055) 응모

4. 제안의 모집

가. 모집기간 : 연중(2009. 11. 30.까지)

※ 12월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문의처

○ 군청 기획감사실(☏560-2125)

5. 제출서류 : 필요시 공무원제안 관리시스템 첨부

○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추천의견서(직무제안에 한함)

○ 참고서류(설계도면, 사진 등)

6. 창안자에 대한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2009. 12. 31(종무식시)

나. 인사상 특전

○ 특별상 : 특별승급

○ 우수상·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다. 시상금

○ 특별상 : 시상금 30만원

○ 우수상 : 시상금 20만원

○ 우량상 : 시상금 10만원

7. 창안의 권리승계

○ 채택된 제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 및 등록권리는 정선군이 승계함

8. 기 타

○ 제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560-2125)로 문의

정선군공고 제2009-131호

정선군종합체육시설 부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종합체육시설 부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25.
정 선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정선군종합체육시설 부진입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9-35번지 일원(병목)
2. 보상대상
   가. 토 지 : 26필지, 3,999㎡
   나. 지장물 : 17건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09.2.25 ~ 2009.3.12(15일간)
   나. 열람장소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033 560-2563 담당 전성중)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이내에 정선군청 관광문화과에 서면 제출
4.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 평가하여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편입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하며,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보상대상 편입토지 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정선읍 애산리	599 -35	전	잡종지	47	47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원우	정선읍 북실리 745-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정선군지부)	근저당권
애산리	599 -36	전	잡종지	1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원우	정선읍 북실리 745-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정선군지부)	근저당권
애산리	599 -37	전	잡종지	2	2	일반상업지역	이원우	정선읍 북실리 745-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정선군지부)	근저당권
애산리	599 -41	전	잡종지	14	14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원우	정선읍 북실리 745-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정선군지부)	근저당권
애산리	495 -8	전	전	240	24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병천	정선읍 애산리 496			
애산리	599 -33	전	전	169	169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영우 외2인	안산시 원곡동 760-2			
애산리	599 -34	전	전	120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승근	정선읍 애산리 648			
애산리	599 -38	전	잡종지	43	43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경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377			
애산리	599 -39	전	잡종지	36	36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승근	정선읍 애산리 648			
애산리	599 -40	전	전	55	55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승근	정선읍 애산리 648			
애산리	600 -2	대	대	32	32	제1종일반주거지역	애산1리	정선읍 애산리 600			
애산리	600 -3	대	전	22	22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승근	정선읍 애산리 648			
애산리	601 -3	전	전	68	68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성극	정선읍 애산리 601			
애산리	602 -7	대	대	56	56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성극	정선읍 애산리 601			
애산리	602 -8	전	전	224	224	제1종일반주거지역	심해월	정선읍 애산리 498			
애산리	602 -9	전	전	173	173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성극	정선읍 애산리 601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애산리	603-8	전	전	150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심해월	정선읍 애산리 498			
애산리	604-4	전	전	555	555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원식	정선읍 애산리 606			
애산리	608-8	전	전	76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정환	정선읍 애산리 610			
애산리	608-9	전	전	50	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상수	정선읍 애산리 599-20			
애산리	608-10	전	전	228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병근	정선읍 애산리 642			
애산리	610-4	전	전	415	4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정환	정선읍 애산리 610			
애산리	611-2	전	전	90	9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심해월	정선읍 애산리 498			
애산리	627-22	전	전	355	355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금옥 외2인	정선읍 애산리 600			
애산리	627-25	전	전	316	316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선대	정선읍 애산리 627-3			
애산리	639-4	전	전	462	4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애선	정선읍 봉양리 57-17			

정선군공고 제2009-132호

소하천 점·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 25.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영신택시		
	대 표 자	김 영 한	주 소	정선읍 애산리 514번지
소 하 천 명		오반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6천(514번지선)		
	면 적	A = 771㎡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7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차용 부지		

정선군공고 제2009-133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공고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보건복지부고시제 2007-88호)에 의거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을 할 경우 접종비의 일부분(30%)을 국가에서 지원

2. 사업시기 : 2009년 3월 1일부터

3. 지원대상 : 만0~12세이하 어린이(1977. 1. 1일 이후 출생아)

4. 지원대상예방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 수두. 디프테리아/파상풍(TD)

5. 정선군지정의료기관 : 별첨

6. 기타 : 전국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

필수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사업

정선군지정의료기관

번호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전화번호	소재지
1	연세외과	의원	563-7778	정선읍 봉양2리 333-25
2	제일의원	의원	592-2115	사북읍 사북372-4

정선군공고 제2009-13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25.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9년 03월 26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9년 02월 26일 ~ 2009년 03월 25일(3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통지내역

등록번호	년식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대구3도5471	1995	프린스1.8MT	우동억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4번지 성서주공110-903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2892번지 9/	종합자원폐차장
강원27노9242	2001	그랜저XG	박만수외1(박광욱)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0번지 67호 16/3 (공채면제)	종합자원폐차장
경기31너3568	1994	스포티지	오현식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8번지 23/1 늘푸른벽산아파트 104동 1201호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번지 17호 4/1 삼봉아파트 13동 403호	
경기32마7111	1996	프린스2.0AT	이상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7번지 11호 102호 17/ ■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7337번지 11호 102호 17/	종합자원폐차장
54나5879	1995	쏘나타투2.0	김영균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5번지 40/6 장자마을부영아파트 709동 403호 ■충북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275번지 40/6 장자마을부영아파트 709동 403호	
인천73노7836	2002	타우너엘피지	노회석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번지 10/2 연수주공1차아파트 105동 512호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번지 9/2 연수주공1차아파트 105동 512호	
서울4조8260	1991	스쿠프	이시행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2번지 23호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번지 2호 16/1 (주)강원랜드사원숙소 A동 603호	종합자원폐차장
06고9052	1995	쏘나타투2.0골드	석운기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188번지 2/2	동강폐차장
07우5618	1995	무쏘	박태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023번지 9호 20/2 102호	
부산1라7435	1989	그랜저	(주)세창	■부산 서구 암남동 171-19	
인천2거2698	1993	세피아	오철근	■인천 계양구 효성동 99번지 11호 뉴서울아파트 2동203호	
울산80너4003	1993	그레이스6밴	장초성	■울산 동구 일산동 538번지 12호 8/5 ■울산 동구 일산동 538번지 12호 7/5	
서울36너5459	2000	마티즈	유미옥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번지 66호 23/6 ■서울 중랑구 망우동 152번지 12호 30/1 B동 103호	종합자원폐차장
96러4098	1995	갤로퍼밴	태광산업개발(주)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14번지 4호	
충북33가1449	1996	브로엄2.0MT	최병기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598번지 18호 1/	

정선군공고 제2009-135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 · 사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3. 02.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대 표 자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소 하 천 명		방제천, 미륵천, 자개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북면 유천리, 구절리 일원		
	면 적	“ 별 첨 ”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 음’
	기 간	2009. 03. 02 ~ 2009. 06. 30		
	목적 및 사유	재해예방 및 하류지역의 가옥,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방댐 설치공사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공고 제2009-136호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일련번호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소유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1	정선	가수	279-1	임	30	4	국(건설교통부)
2	정선	가수	산64	임	16	20	조정임
3	정선	가수	산77	임	16	4	이기라
4	정선	가수	산79	임	16	3	최경남
5	정선	광하	578-1	임	20	42	최혜규
6	정선	광하	산126	임	24	10	신종표
7	정선	광하	산164	임	30	13	최종진
8	정선	광하	산169	임	26	3	이석원
9	정선	광하	산189	임	30	51	이수익
10	정선	광하	산189-1	임	30	2	배승일
11	정선	광하	산195	임	28	1	정선군
12	정선	광하	산196	임	20	7	유성근
13	정선	광하	산242-2	임	24	4	신용섭
14	정선	귤암	20	임	30	1	국(재무부)
15	정선	귤암	산192	임	20	1	정선군
16	정선	귤암	산199	임	40	2	정선군
17	정선	용탄	산133	임	20	5	고돈균
18	정선	용탄	산157	임	40	15	고돈균
19	정선	용탄	산160	임	24	10	오종남
20	정선	용탄	산162	임	24	7	정선군
21	정선	용탄	산163	임	20	7	남상건
22	정선	용탄	산167-1	임	36	8	신재국
23	정선	용탄	산168	임	24	8	전국표
24	정선	용탄	산173	임	30	1	손기완
25	정선	용탄	산199-1	도	30	9	강원도
26	정선	용탄	산200	임	20	5	전제진
27	정선	회동	산2-1	임	30	5	산림청
28	정선	회동	산97	임	40	2	정선군

정선군공고 제2009-137호

소나무류가지마름병 피해목 제거대상내역

일련번호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소유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1	정선	덕송	산1	임	30	4	지춘식
2	정선	덕송	산81	임	25	1	안덕균
3	정선	덕송	산109	임	20	1	유광해
4	정선	덕송	산36	임	10	12	고정구
5	정선	덕송	산39	임	25	8	지춘식
6	정선	덕송	산41	임	10	4	강명자
7	정선	덕송	산41	임	10	6	강명자
8	정선	덕송	산50-1	임	30	4	함종규
9	정선	덕송	산59	임	20	2	최명순
10	정선	덕송	산71	임	30	1	제주고씨문충공파정선종문회
11	정선	덕송	산72-2	임	30	1	전봉수
12	정선	덕송	산78	임	50	2	고상길
13	정선	덕송	산93	임	30	3	이창균
14	정선	덕송	산94-2	임	20	8	김연자
15	정선	덕송	산97-1	임	30	1	제주고씨화전군파정선종문회
16	정선	덕우	682-3도	임	35	1	강원도
17	정선	덕우	408-1	임	25	7	정찬성
18	정선	덕우	412-3	임	20	3	윤덕현
19	정선	덕우	산110	임	30	23	전제봉
20	정선	덕우	산116-3	임	25	29	이원명
21	정선	덕우	산49	임	30	1	서보경
22	정선	덕우	산51-1	임	20	7	최종철
23	정선	덕우	산52-3	임	15	1	강릉최씨정선억곡파문중회
24	정선	덕우	산53	임	20	1	김영출
25	정선	덕우	산60	임	20	6	배창현
26	정선	덕우	산64-3	임	40	8	김선욱
27	정선	덕우	산92-2	임	20	16	전문표

28	정선	덕우	산99	임	35	1	정선군
29	정선	봉양	산37	임	30	22	이주형
30	정선	봉양	산66-1	임	60	1	정선군
31	정선	북실	산11	임	25	30	동명임업주식회사
32	정선	북실	산3-1	임	30	7	제주고씨화전군파정선종문회
33	정선	북실	산8	임	25	2	박순덕
34	정선	신월	13-3	임	20	1	최금주
35	정선	신월	산224	임	35	2	최종태
36	정선	신월	산230	임	20	1	정선군
37	정선	신월	산231-4	임	25	10	전영걸
38	정선	신월	산232	임	25	68	정선군
39	정선	신월	산46	임	30	13	최보순
40	정선	신월	산81-7	임	15	2	국(건설교통부)
41	정선	애산	산104	임	25	2	최영익
42	정선	애산	산111	임	20	25	김성각
43	정선	애산	산185	임	25	2	유씨정선종중